

2018년도
시설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영 동 군
(기 획 감 사 담 당 관)

- 2018년도 시설사업소 -

감사내용 및 결과 공개문

《 감사내용 》

- 기 간 : 2018. 7. 9. ~ 7. 13. (5일간)
- 대상기관 : 시설사업소
- 감 사 반 : 기획감사담당관 외 5명
- 감사범위 : 2015. 9월부터 추진한 업무전반
- 감사중점
 - 예산·회계 집행실태
 - 보조사업 추진 및 민간위탁 지도점검 등
 - 인허가 등 민원처리실태 및 각종 시설공사 집행현황

《 감사결과 》

- 총 지적건수 : 15건
 - 행정상 조치 : 15건(주의 9, 시정 6)
 - 재정상 조치 : 회수 2건 1,774,460원
 - 신분상 조치 : 해당없음
- 수범사례
 - 노근리평화공원 장미명상정원 조성과 장미축제 개최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군 홍보와 노근리평화공원 활성화에 노력
 - 송호관광지 내 「영동 카누카약체험장」 조성으로 송호관광지와 연계한 가족단위 이용객의 수상레저스포츠 저변 확대

주요 지적사항

연번	부서명	지 적 사 항	처분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합계		15건 (과거사지원 6, 체육시설 5, 레저시설 2, 공통 2)	주의 9 시정 6		회수 2건 1,774,460원
1	과거사 지 원	◦ ○○○○○ ▲▲▲▲ 도색공사 분할계약 부적정	주의		
2		◦ 지출원 직무대리 지정 소홀	주의		
3		◦ 특근매식비 카드사용 부적정	주의		
4		◦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카드 사용 부적정	시정		
5		◦ 지방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시스템 입력 소홀	시정		
6		◦ 수감자료 작성 소홀	주의		
7	체육시설	◦ 지시사항 이행 소홀	주의		
8		◦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9		◦ 공공체육시설 토지 지목변경 소홀	시정		
10		◦ 건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의 분리발주 미 시행 및 원가계산(제경비) 산정 부 적정	시정		회수 811,000원
11		◦ 군 소유 생활체육시설 부동산등기 소홀	시정		
12	레저시설	◦ 일상감사 미이행	주의		
13		◦ 기간제근로자 피복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14	과거사지원 체육시설	◦ 민간위탁사무 관리 운영 소홀	주의		
15	체육시설 레저시설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정산 부적정	시정		회수 963,460원

【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 ▲▲▲▲ 도색공사 분할계약 부적정

【현 황】

공사(용역)명	계약금액 (원)	업체명	공종	공기	집행일자
계	25,907,000				
○○○○○ ▲▲▲▲ 철재계단 도색공사	3,258,000	○○○○○	공사	착공일로부터 7일	2018.6.11
○○○○○ ▲▲▲▲ 플장 도색공사	19,800,000	○○○○○	공사	착공일로부터 29일	2018.6.28
○○○○○ ▲▲▲▲ 매표소 도색 공사	2,849,000	○○○○○	공사	착수후 15일	2018.6.29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 II 장/1./1-6.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¹⁾』 및 『단일공사²⁾』는 기본

1) “동일구조물 공사”란 천연재료나 인조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 인공구조물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

2) “단일공사”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

나) 예산에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가)”를 준용.

적으로 통합발주를 해야 하며 예산 집행과정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통합발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1절/5.「분할계약의 금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시설사업소에서는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사업내용의 유사성·중복성을 고려하여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를 위해 노력하고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상기 현황과 같이 ○○○○○ ▲▲▲▲ 도색공사를 철재계단 도색, 풀장 도색, 매표소 도색으로 공사량을 분할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집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시설사업소장은,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를 위해 노력하시고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는 일이 없도록 입찰 및 계약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지출원 직무대리 지정 소홀

【현 황】

○ 지출원 부재현황

소속	직급	이름	종별	기간	일/시간	사유
시설사업소	지방△△주사	○○○○	공가	2016. 10. 31 09:00 ~ 2016. 10. 31 18:00	1일	건강검진(재검)
시설사업소	지방△△주사	◆◆◆◆	휴가	2017. 08. 14 09:00 ~ 2017. 08. 17 18:00	3일	하계휴가

○ e-호조 지급명령 승인내역

적요	지급일자	지급명령 번호	거래처명	지급 담당자	지급 승인자
체육시설 전기요금 납부(10월 납부금)	2016-10-31	00000755	-	-	-
체육시설 환경정비 사업 인부임 및 자부담 보험료 지급(10월분)	2016-10-31	00000757	-	-	-
체육시설 환경정비 사업 4대 보험료 지급(10월 기관 부담금)	2016-10-31	00000756	-	-	-
용두공원, 공원노원관리원 인부임 및 자부담보험료 지급(10월)	2016-10-31	00000763	-	-	-
용두공원, 공원노원관리원 보험료 기관부담금 지급(10월)	2016-10-31	00000762	-	-	-
꽃묘관리원 인부임 및 자부담 보험료 지급(10월)	2016-10-31	00000761	-	-	-
꽃묘관리원 보험료 기관부담금(10월)	2016-10-31	00000760	-	-	-
국도공원화 인부임 및 자부담보험료 지급(10월)	2016-10-31	00000758	-	-	-
영동근린구장 확충사업(건축,기계,토목) 관급자재대(레미콘)	2016-10-31	00000764	-	-	-
영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관급자재대(금속채창)	2016-10-31	00000765	-	-	-
국도공원화 보험료 기관부담금 지급(10월)	2016-10-31	00000759	-	-	-
용두2공원급수대배수구수리비지급	2017-08-14	00000605	-	-	-
용두공원음악분수옆급수대수리비지급	2017-08-14	00000604	-	-	-
노근리 평화공원 초화류(수련) 구입	2017-08-14	00000606	-	-	-
영동 카누카약 체험장 조성사업 관급자재(퍼걸러) 구입	2017-08-14	00000607	-	-	-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시설사업소는 군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으로 제1관서에 해당하며, 제3조에 따라 징수관, 재무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은 관서의 장인 시설사업소장이며, 지출원은 회계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은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로서 서무업무담당(자)임.
- 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한 영동군 지방공무원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3조에 의하면 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설사업소장이 문서로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출원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시설사업소에서는 지출원인 담당주사가 휴가 등의 사유로 부재시 문서로써 직무대리를 지정해야 함에도 지출원 직무대리 지정 결재도 거치지 않고 e-호조 지출원 변경을 통해 2016.10.31.일에 체육시설 전기요금 납부 외 10건 및 2017.8.14.일에 용두2공원 급수대 배수구 수리비 지급 외 3건의 지출을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시설사업소장은 지출원인 담당주사가 휴가 등의 사유로 부재시 반드시 문서로써 직무대리를 지정하시고, 지출원 직무대리 지정 없이 e-호조상 지출원 변경 후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재무회계 규칙 및 직무대리 규칙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특근매식비 카드사용 부적정

【현 황】

○ 카드 사용 부적정 현황

사업명	통계목	적요	지급일자	지급명 령번호	채주	금액(원)	거래일자	비고
기본경 비(시설 사업소)	사 무 관리비	산 불 안 전 의 날 근무에 따른 시 간 외 근무 자 급량비 지급	2018.4.4.	144	-	39,000	2018.3.31.	IC신용 승인
					-	48,000	2018.04.01.	IC신용 승인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급량비는 현금영수증 카드 의무적 적용대상이며, 현금영수증 사용시에는 집행품의 금액범위 한도 내에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고 비목별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금영수증에는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증빙서류로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출을 결정하여 해당 사업자 계좌로 입

금하여야 한다. 단, 급량비 중 특근매식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 예산지출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현금영수증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시설사업소에서는 2018 3. 31. ~ 4. 1.일 산불안전의날 근무에 따른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지급 명목으로 ★★★★★의 1개 업체에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신용카드 신용승인 매출전표로 결제하는 등 카드사용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시설사업소장은 급량비 지출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라 반드시 현금영수증카드를 사용하시고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카드 사용 부적정

【현 황】

○ 100만원 이상 경비 신용카드 사용내역

승인일시	승인번호	카드번호	승인금액	가맹점번호	가맹점명	매입금액
2016-05-23 14:40:45	77843997	-	1,760,000	-	-	1,760,000
2016-07-01 16:41:55	78103324	-	1,474,000	-	-	1,474,000
2016-09-08 10:24:38	75766949	-	1,797,400	-	-	1,797,400
2017-03-10 09:25:24	41637696	-	1,072,400	-	-	1,072,400
2017-03-22 15:55:50	70538546	-	1,100,000	-	-	1,100,000
2017-03-23 11:02:21	75989341	-	1,760,000	-	-	1,760,000
2017-04-03 15:38:20	72789111	-	1,850,000	-	-	1,850,000
2017-04-18 13:08:48	72948921	-	1,200,000	-	-	1,200,000
2017-04-18 13:42:26	73320072	-	1,150,000	-	-	1,150,000
2017-04-18 14:17:22	73623542	-	1,890,000	-	-	1,890,000
2017-05-16 10:33:58	71042542	-	1,550,000	-	-	1,550,000
2017-05-29 16:12:10	71963880	-	1,716,000	-	-	1,716,000
2017-06-05 14:12:55	74447431	-	1,500,000	-	-	1,500,000
2017-06-07 10:58:40	79221929	-	1,749,000	-	-	1,749,000
2017-06-15 17:24:01	75874579	-	1,078,000	-	-	1,078,000
2017-06-26 11:53:05	72590941	-	1,320,000	-	-	1,320,000
2017-06-30 10:40:19	77428006	-	2,000,000	-	-	2,000,000
2017-07-03 15:37:19	76679065	-	1,069,200	-	-	1,069,200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사용내역에 대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매월 1회 자치단체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시설사업소에서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후 다수의 매출전표에 서명을 누락한 사실이 있고, 매월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사용내역을 보고하지 않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17년 까지 신용카드 100만원 이상 사용내역을 발취분석한 결과 상기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시설사업소장은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즉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시기 바라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매출표 서명란에 사용자의 실명 기재, 매월 신용카드 사용내역 보고 등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지방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시스템 입력 소홀

【현 황】

○ 성과관리카드 미승인 현황

회계연도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액 (천원)	집행액 (천원)	성과관리카드 제출여부	성과관리카드(e호조) 등록여부	비고
2016	○○○○○○○○○ ○○ ○○○○	-	22,500	22,499	여	부	민간경상 사업보조
2017	○○○○○○○○○ ○○ ○○○○	-	25,000	24,998	여	부	민간경상 사업보조
2016	▲▲▲▲▲▲▲▲ ▲▲▲▲▲	-	12,000	12,000	여	부	민간행사 사업보조
2017	▲▲▲▲▲▲▲▲ ▲▲▲▲▲	-	12,000	12,018	여	부	민간행사 사업보조
2016	□□□□□□□ □□□□□	-	7,500	7,473	여	부	민간행사 사업보조
2017	□□□□□□□ □□□□□	-	7,500	7,469	여	부	민간행사 사업보조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신청 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 행정안전부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자치단체장은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근거로 관리카드를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에 등록하여(사업부서 등록 신청→예산부서 승인) 3년간 관리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이력관리와 함께 매년 시행하는 보조사업의 성과평가와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에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시설사업소에서는 【현황】에서와 같이 민간경상(행사)보조사업업무를 추진하면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등록관리 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그로인해 매년 시행하는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및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에 활용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관련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시설사업소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즉시 등록하여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등에 활용하기 바라며,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시스템 관리를 위한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수감자료 작성 소홀

【위법부당사항】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 제출 요구)제1항에 따르면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라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시설사업소에서는 기획감사실-8624(2018. 6. 7)호에 따른 수감자료를 작성하면서 수감자료 19. 보조사업현황 【2018년 민간자본보조사업 ○○○○○○○○○ ○○ 외 1건, 2015 ~ 2018년 민간경상사업보조 ▲▲▲▲▲▲▲▲ ▲▲▲▲▲▲▲▲ 4건, 2015 ~ 2018년 민간행사사업보조 ■■■■■■■■■■ ■■■■■■ 4건, △△△ △△△△△△△△△△ 4건】 및 29. 시설물 손해보험(공제) 가입현황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국궁장 외 31건, 영조물배상: 군민운동장 외 335건】에 대한 수감자료 상당부분을 누락하는 등 수감자료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시설사업소장은 향후 정당한 이유없이 불성실하게 수감자료 작성을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지시사항 이행 소홀

【현 황】

○ 군수 지시사항 현황

지시일자	지시사항	사업소 검토의견(조치계획)	비고
2017.11.23.	영동체육공원 조성사업 조속히 추진	○ 영동체육공원 토지매입비를 2018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실시설계, 토지매입을 하겠으며 ○ 중앙부처 및 도청에 수시 방문하여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음	
2017.11.23.	전천후게이트볼장 소방시설 설치	○ 읍면 전천후게이트볼장에 소화기 비치여부 조사완료 ○ 2018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소화기를 비치하겠음	

【위법부당사항】

- 2017.11.23. 영동군 기획감사실에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시 군수 지시사항을 각 부서에 시달하고, 지시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출토록 요구한 바 있음. 시설사업소 지시사항으로 영동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전천후게이트볼장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를 지시하였음.
- 군수 지시사항에 대한 시설사업소의 검토의견(조치계획)을 보면 영동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및 도청을 방문하여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전천후게이트볼장 소방시설은 2018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소화기를 비치하겠다고

하였으나, 시설사업소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일 현재까지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출장결과보고서 등 활동내역이 없고, 읍면 전천후게이트볼장에 비치할 소화기 예산마저 확보하지 않는 등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시설사업소장은 군수 지시사항인 영동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천후게이트볼장에 소화기를 비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8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현 황】

○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원 현황

연도	예산과목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비고
2016	민간자본 사업보조 (6)	○○○ 게이트볼장 휴게실 집기구입	4,000	완료
		○○○ 그라운드골프장 바람막이설치	5,000	완료
		○○○ 게이트볼장 집기 구입	4,200	완료
		○○○ 게이트볼장 집기 구입	3,500	완료
		○○○ 그라운드골프장 방송시설 설치	20,000	완료
		○○○ 게이트볼장 지붕처마 보완	5,000	완료
2017	민간자본 사업보조 (4)	○○○ 지촌리 게이트볼장 물품 구입	10,000	완료
		○○○ 게이트볼장 온수기 구입	2,500	완료
		○○○ 게이트볼장 냉장고 등 구입	2,900	완료
		○○○ ○○○○ 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	10,000	완료
2018	민간자본 사업보조 (2)	○○○ 게이트볼장 보수	20,000	교부결정.5.29
		○○○ 게이트볼장 보수	3,000	“

【위법 부당사항】

1.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원근거 미 운영

- 「2018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르면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운영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출은 반드시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2014.5.28.개정, 2016.1.1.시행) 라고 되어있음.
- 시설사업소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경우 지출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보조사업의 예산편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어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2016년 6건, 2017년 4건, 2018년 2건 등 총 12건의 보조사업을 지원근거(조례)없이 예산편성 및 지원한 사실이 있음.

2. 보조사업의 사무전결 처리규칙 미 준수

- 영동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하며
- 2017.1.5. 개정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르면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통지에 앞서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지급계획(방침결정)을 군수의 결재를 득한 후 금액의 범위에 따라 교부결정 시 전결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음.
- 시설사업소에서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7년도 4건, 2018년도 2건에 대한 군수의 보조금 지급계획(방침결정) 절차를 생략하는 등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소홀

- 영동군 기획감사실에서는 정부의 상반기 고용상황 및 거시경제 불안요인 해소 등 정부의 정책기조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집행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2018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에 시달하고(기획감사실-1378, 2018.1.22.)영동군 상반기 중 신속집행 대상 예산의 55.5%(1,615억원) 집행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추진한 바 있음.
- 시설사업소에서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인 2018민간자본보조사업(2건)을 추진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사업에 대한 교부결정을 지연(2018.5.29.)하였고, 수감일 현재까지도 보조금이 미집행(교부)되는 등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시설사업소장은 보조금 지급 근거 조례를 2018년 12월 까지 조속히 제정하시기 바라며, 보조금 지급계획(방침결정)시에는 반드시 군수의 결재를 득한 후 금액의 범위에 따라 교부결정 시 전결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보조금 교부결정 지연이나 보조금 미집행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9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공공체육시설 토지 지목변경 소홀

【현 황】

○ 공공체육시설 지목

구분	시 설 명	준공년도	위치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계(8개시설)			11필지			
1	◆◆전천후 게이트볼장	2009.06.02	-	-	학교용지	○○○	
				-	임	◆◆◆◆◆◆◆	
2	◆◆전천후 게이트볼장	2008.03.14	-	-	전	영동군	
				-	대	영동군	
3	◆◆전천후 게이트볼장	2012.12.06	-	-	답	영동군	
4	◆◆전천후 게이트볼장	2011.06.09	-	-	잡	영동군	
				-	잡	영동군	
5	◆◆전천후 게이트볼장	2008.03.14	-	-	대	영동군	
6	◆◆전천후 게이트볼장	2011.11.01	-	-	답	영동군	
7	◆◆전천후 게이트볼장	2009.08.18	-	-	잡	영동군	
8	◆◆전천후 게이트볼장	2015.04.23	-	-	대	영동군	

【위법부당사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어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시설사업소에서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외 7개 시설, 11필지에 대해서 감사일 현재까지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는 등 공공체육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처분내용】

- 시설사업소장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외 7개 공공체육시설 11필지 토지의 지목변경을 이행하시기 바라며, 향후 재발 사례가 없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0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811,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건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의 분리발주 미시행 및
원가계산(제경비) 산정 부 적정

【현 황】

○ 원가계산(제경비) 산정 부 적정 현황

공 사 명	사업량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도급자	도급액(천원)		
					당초	변경	정산액
★★★★★ ★★★★★ ★★공사	건축연면적 2768.29㎡ 폐기물 219톤	15.12.10	15.12.15 16.10.31	△△△△△(주) ◎◎◎	1,697,306	1,696,495	811

【위법부당사항】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당초 분리발주 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 하지 않은 건설공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에 추가로 건설폐기물이 발생되어 분리발주 대상공사(위탁 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총량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추가로 발생한 건설폐기물에 대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은 발주자가 분리 발주하여야 하고,
-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공건설 사업비절감 매뉴얼」에 따라 공

사발주 시 제 경비(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각종 보험료 등) 산정관련 강교용접검사비, 시공상세도 작성비, 시공측량비, 도로대장 전산화, 폐기물처리비 등은 제외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31조(시공사 제출 서류의 검토)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출하는 준공검사원의 증빙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급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하고, 동 지침 제161조(기성 및 준공업무 관련)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원을 접수 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 시설사업소에서는 “★★★★★ ★★★★★ ★★공사”에 대하여 공사 중 추가로 건설폐기물 219톤이 발생하여 분리발주 대상이었음에도 분리발주하지 않고 신축공사 설계변경 시 포함하여 처리하였고, 설계변경 시 추가 발생된 폐기물(219톤)을 내역에 반영시 제 경비 계상이 불필요 함에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계상하여 811천원(부가세포함)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였으며, 준공신고서를 접수하면서 공사와 관련된 건설폐기물신고 및 처리결과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지 않았음에도 보완 지시 없이 준공처리하여 공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시설사업소장은 원가계산을 부적정하게 하여 과다 지급한 811,000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위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제반내용에 대한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1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군 소유 생활체육시설 부동산등기 소홀

【현 황】

○ 부동산 미등기 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액 (천원)	사업기간	준공일	건축물 등재일	부동산 등기일
◆◆생활체육 시설(게이트볼 장)조성사업	게이트볼장 조성 (1층필로티구조, 2층게이트볼장 및 부대시설)	1,697,306	2015.12. ~ 2016. 10	2016.10.31	2017.9.18	미등기
▣▣ 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 조성 (대지1,235㎡/건축579㎡)		2012~2016		2015.4.23	미등기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8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밝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22조(신청주의), 제23조(신청인) 및 제24조(등기신청방법)에 따라 등기권리자(의무자)는 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를 이행하여야 함.

- 그러나, 시설사업소에서는 【현황】에서와 같이 영동군 소유 생활체육 시설(게이트볼장)을 공유재산으로 신축, 취득하면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등재만 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보존등기를 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 부동산 등기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시설사업소장은 미등기 생활체육시설(게이트볼장) 2개소에 대해 즉시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추후 공유재산 취득 후 미등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업무 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2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일상감사 미이행

【현 황】

○ 일상감사 미이행 현황

공 사 명	사업량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도급자	추정가격(천원)		
					최초	변경	증
★★★★ ★★★ ★★사업	★★★★ ★★★ 설치1식	17.04.10	17.04.17 17.08.14	-	304,091	335,917	31,826 (10.5%)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일상감사 규정」 제3조(일상감사 대상 및 범위) 제1항에 의하면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가격이 일상감사 대상금액을 초과하거나 직전 일상감사를 받은 금액에서 10퍼센트 이상이 증액이 될 경우 같은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요청서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 시설사업소에서는 “★★★★ ★★★ ★★사업” 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31,826천원) 증가비율이 10.5%가 됨에도 일상감사를 신청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시행하여 일상감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시설사업소장은 일상감사 대상임에도 일상감사를 거치지 않고 설계변경 후 사업집행을 하는 일이 없도록 일상감사 규정에 대한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3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기간제근로자 피복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현 황】

○ 지출현황

회계 년도	사업명	통계목	지출현황			
			적요	지급일자	지급액(원)	거래처명
2018	동네체육 시설확충	자산및물품 취득비	○○○○○○○○ 기간제근로자 근무복 구입	2018.5.18.	344,000	-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대해 인부임 및 급량(간식)비, 부상치료비, 피복비, 여비 등 근로자고용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정의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현업부서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의 피복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또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집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시설사업소는 ○○○○○○○○ 기간제근로자 근무복 구입을 위한 예산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101-04))로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함에도 상기 현황과 같이 동네체육시설확충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시설사업소장은 세출예산 부적정 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대한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4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민간위탁사무 관리 운영 소홀

【현 황】

○ 민간위탁 현황

(단위 : 천원)

위탁사무	수탁자 현황		위탁기간	민간 위탁금 (2018년 기준)	비고
	단체명	대표자			
□□□□□□□□ □□□□	-	-	2017.1.1.~2019.12.31	492,000	
★★★★★★ ★★★★	-	-	2017.1.1.~2018.12.31	125,562	
△△△△△△ △△△△	-	-	2017.1.1.~2018.12.31.	42,303	

【위법부당사항】

1.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사무편람 미작성

○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그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사업소에서는 수탁기관(□□□□□□□□, ★★★★★★★, △△

계획서 제출 등)에 따르면 수탁자는 수탁기간 개시 1년 단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에 영동군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14조(회계 및 결산)제3항에 따라 수탁자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매월말일 기준으로 이용인원 및 수입 상황을 익월 5일까지 영동군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제14조제4항에 따라 영동군에서는 연1회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협약되어 있음.

- 그러나 시설사업소에서는 수탁자가 사업계획서와 예산안, 매월말일 기준 사용료 징수현황을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수탁자에 대한 연 1회 회계감사 또한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시설사업소장은 수탁단체가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공개하도록 지도·감독하시기 바라며, 수탁단체가 종사자에게 급여지급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4대보험료 납부시 기관부담금과 근로자 본인부담금을 구분하여 지출품의 후 납부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초과근무 대장과 급식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수당과 급량비를 지출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민간위탁 정산보고서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행정지도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할 경우 엄중 문책할 예정이니 내실있는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①” 사업에 대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의 사용불가 항목(우의)으로 사용했음에도 준공 시 198,800원을 정산(감액) 조치하지 않고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 “②,③” 사업에 대하여 준공서류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사용 증빙자료가 없음에도 준공 시 ②사업의 경우 288,480원, ③사업의 경우 476,180원을 정산(감액) 조치하지 않고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시설사업소장은 과다지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63,460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업무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